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자의 재고품 순환이용 촉진 노력 규정 등〉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59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업자의 재고품 순환이용 촉진 노력 규정	3
2.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의류 추가	6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17일 김태선 의원이 제출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패스트 패션(SPA) 업체의 성장 등은 패션 산업의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폐의류의 급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의류뿐 아니라,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의류 재고품 역시 상당량에 달하며,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 훼손을 우려해 이를 몰래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고 의류의 소각은 제품 생산에 투입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새 옷을 바로 소각 처리하는 것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의 측면뿐 아니라,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판매되지 않은 직물 및 신발 재고의 폐기를 금지하는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순환자원 경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사업자가 의류재고품을 폐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의류 재고품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류재고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의류 기업이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제4항 신설), 의류를 제품등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 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상 사업자의 책무]

-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 ②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 ③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업자 책무에 더하여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된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제안 이유에 따르면 패스트패션 업체의 성장으로 폐의류가 증가¹⁾하고, 의류 재고품을 단순 폐의류로 소각하는 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임.

1)

[폐섬유류 내 폐의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톤/년)

연도	구분	발생량	처리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
2020	소계	86,050.7	84,513.6	1,376.6	-	160.5
	생활폐기물	82,422.7	82,422.7	-	-	-
	사업장폐기물	3,628.0	2,090.9	1,376.6	-	160.5
2021	소계	120,481.6	119,382.3	1,071.4	-	27.9
	생활폐기물	118,386.3	118,386.3	-	-	-
	사업장폐기물	2,095.3	996.0	1,071.4	-	27.9
2022	소계	108,434.2	107,237.7	908.2	-	288.2
	생활폐기물	106,536.3	106,536.3	-	-	-
	사업장폐기물	1,897.9	701.4	908.2	-	288.2

자료 : 환경부

일부 의류 기업들이 브랜드 회소성을 지키려는 이미지 관리, 재고 소각 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여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유인 등의 사유로 인해 재고 의류를 소각해서 폐기하고 있는²⁾ 상황에 비추어볼 때, 동 개정안은 재고품의 폐기 대신 순환이용 촉진 노력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품의 과다생산을 방지하고 재고품 처분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중 순환이용촉진 노력의무는 선언적으로 규정한 데 비하여, ‘재고품 소각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은 구체적인 규제를 신설하는 것인바,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담고 있는 동조의 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별도의 조문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임.

또한, 재고품 처리 관련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재산인 재고품에 대한 규제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재고품 폐기 사유 제한 또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개정안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음.

2) 경향신문, ‘그날 ‘007 작전’ 속에 새 옷들이 소각됐다’에 따르면, 패션기업은 보관비 절약, 손실 처리를 통한 세금 보전 등을 위하여 재고 의류를 소각하고 있음.

2.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의류 추가

개정안은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종이류, 유리용기류, 조강 또는 선철류, 의류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17조(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u>종이류, 유리용기류, 조강 또는 선철류, 의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u>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7조³⁾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생산자·수입업자에게 제품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7조(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2.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3. 제품등의 생산·유통·소비·처분 등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제품등의 생산·유통·소비·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사항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준수사항]

법 제17조	시행령(안) 제7조제2항
•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 • 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 순환원료 및 친환경소재 사용 확대 • 환경부하 최소화 위한 친환경 공법 사용 확대
•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내용연수 및 부품 보유기간 이상 준수 •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
• 제품등의 생산·유통·소비·처분 등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 폐기물 발생 감량,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용이성 제고 • 순환이용율 향상 위한 재질·구조 개선
• 제품등의 생산·유통·소비·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사항	• 탄소발자국 산정 등 탄소배출량 저감 노력
-	(공통적용) •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정보 제공

즉, ① 생산단계에서 사업자는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고, 순환원료 사용 확대,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② 유통단계에서 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저감,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확대, 재활용이 용이한 유통포장재 사용 등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③ 소비단계에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제품 설계 시 수리의 용이성을 고려하며, 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이와 같은 노력 의무 준수 여부는 동법 제18조4)에 따라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 시 활용됨.

한편, 현행법 제17조 위임 규정에 따라, 순환이용 촉진 노력 의무 대상 제품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이 개정(2024.12.24.)⁵⁾되어,

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제품·포장재, ② 자동차, ③ 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대상 제품에 포함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자동차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등
② · ③ (생략)

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제1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5) 2025.1.1. 시행

[현행법 제17조 적용대상 제품]

구분	내용
1. 자원재활용법 제18조 각 호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1.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가.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나.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다.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필름류 라. 전지류 마. 타이어 바. 윤활유 사. 조명제품 아.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자. 곤포(뭉치) 사일리지(silage)용 필름 차.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등
2. 전자제품등자원 순환법 제9조에 따른 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과 소형으로 한정한다)
3. 전자제품등자원 순환법 제15조에 따른 회수·연계·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냉장고, 전기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한다),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텔레비전,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Lap top)형 개인용 컴퓨터, 내비게이션,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개인용 컴퓨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와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스캐너(휴대용은 제외한다),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한다),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한다),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자동판매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태양광 패널
--	--

자료 : 환경부

개정안은 순환이용 촉진 노력 의무 대상 제품을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종이류, 유리용기류, 조강 또는 선철류, 의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현행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대상 제품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규제 대상을 명확화할 수 있으며, 폐기·소각되는 의류 재고의 순환이용을 제고하여 폐기물 발생 감량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음.

다만,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17조는 원료물질이 아닌 완제품 생산·수입업자에게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⁶⁾으로, 원료물질 단위(종이류, 조강류 또는 선철류 등)를 규정하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순환이용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6) 원료의 순환이용 사용 촉진을 위한 조문은 동법 제16조에 해당함

제16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 기반의 원료 등 천연자원 대체원료의 연구개발
2. 순환원료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3.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기법의 활용
4. 순환원료의 사용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 그 밖에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적용 대상 제품 선정 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폐의류 재활용산업은 대부분 영세하며, 폐의류 재활용기술 또한 초기 단계임에 따라, 의류 등 품목을 순환이용 촉진 노력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유로 동 규정에 대하여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정부 부처 관계 당국의 의견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의류의 순환이용을 위해서는 폐의류를 재활용해 다시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 개발⁷⁾ 및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6

7) 의류를 구성하는 섬유 소재는 천연 실, 인공 필라멘트, 플라스틱, 금속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지고, 이에 염료, 가공제 등이 첨가되어 있어 이를 선별하고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한국화학연구원은 2023년 ‘합성섬유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개발하여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 중임.